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.1.26(화) 10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3. 제안 이유

○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운용중인 중소 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 결정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

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인원수 변경(제11조제2항)- 20명 이내 → 15명 이내
- 나.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변경(제11조제5항)
 -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, 위원회 운영의 전문 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시장·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
 - · (당연직 위원) : 기업유치지원과장 →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,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 제외
- · (간 사):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 → 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다. 판매장운영위원회 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개최 조항 삭제(제13조제2항)

- 매년 2월 소집 개최토록 한 정기회의 경우 개최 실익 및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장이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 개최토록 개정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운영위원회 인원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판매장운 영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기존 운영위원으로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가 참여했었는데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에서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함.